

가격이 다소간 인상요인을 안고 있으나 장기화되고 있는 축산경기의 불황과 정부의 강력한 저물가정책에 부응코져 사료가격인상을 억제하고 있는 실정이며, 업계에서는 사료제조원가상승요인의 최소화과 귀중한 외화의 절약을 지상목표로 삼고 사료곡물 수입 다양화를 적극 추진해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사료곡물의\*의제매입 공제 대상품목을 종전의 옥수수, 수수, 밀에서 호밀, 보리, 귀리 및 강피류 등으로 확대하여 84년 5월 1일부터 시행토록 배려함으로써 금후 국제시세의 큰 변동이 없는 한 배합사료 가격은 현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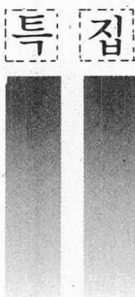
최근의 사료곡물사용이 다양화되면서 사료품질이 저하되었다는 불평이 있는듯하나 이는 지난겨울 장기간에 걸친 강추위와 원료사용 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스트레스로 판단되며 구미선

진국의 경우 우리보다 다양하게 곡물을 사용하면서도 우수한 품질의 사료를 생산하고 있음을 상기하고자 하며 따라서 사료의 품질은 사용하는 원료자체의 문제점보다는 원료제조기술에 크게 좌우되므로 금후 배합사료구입은 가격이나 거래조건보다는 품질위주로 현명하게 선택하여야 할것이다. 그간 다소 논란이 있어온 국내산 보리의 사용시기는 미국의 옥수수, 수수, 대두 등 사료곡물의 수확기인 10월부터 사용키로 협의가 되었으며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금년도의 미국농산물 생산량이 높을것으로 보아 금년말경 도입되는 곡류의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므로써 전반적으로 보아 금년중에는 배합사료가격의 변화가 거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擬制買入稅額控除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을 매입할 때에 매입가격에 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을 말함

肉豚價格의

安定對策



許 信 行 (農村經濟研究院·研究委員)

가격안정이란 육돈가격의 안정대 즉 생산자보호를 위한 최저보장가격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최고허용가격을 설정하고 그 속에서 시장가격이 자유로히 변동함을 말한다.

양 돈산업의 항구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돼지가격

이 안정되어야 한다. 더불어 배합 사료가격이 저렴한 수준에서 역시 안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일단 사료가격의 안정을 전제로 하고 돼지가격을 어떻게 하면 안정시킬 수 있을까?

돼지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면, 먼저 "안정"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설정해둘 필요가 있다. 만일 "가격안정"

이 수급의 어떤 변동에도 움직이지 않고 평행선상의 고정가격을 의미한다면, 통제경제체제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철두철미한 계획생산에 육류배급제도를 갖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제도는 실현성을 갖지 못한다. 너무도 비능률적이고 자원낭비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32개월의 주기로 불황과 호황을 번갈아 가며 경험해야 되는 지난 20여년간의 가격변동을 그대로 방치해둘 수도 없다. 호황 때에는 이윤의 폭이 커서 너도 나도 돼지기르기를 원한 결과 과잉생산을 초래하고, 반대로 불황 때에는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져 불쌍한 소규모 부업양돈농가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그런 가격변동 아래서는 양돈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없다.

제 1 단계 관측결과 발표, 제 2 단계 돼지고기 수매, 제 3 단계 돈육수출, 제 4 단계 어미돼지의 계획적 감축과 사육두수 억제등의 인정대책을 취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격안정"이란 개념을 「육돈가격 안정대(安定帶)」, 즉 생산자보호를 위한 최저보장가격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최고허용가격을 설정하고 그 속에서 시장가격이 자유로이 변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규정지어 볼 수 있다. 최저보장가격은 전국적인 평균생산비를 책정하고, 최고허용 가격은 최저보장가격에 생산자의 적정이윤과 유통마진, 그리고 계절변동폭을 감안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육돈의 자육시장가격(서울시의 3개 중앙도매시장 가격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함)이 최저보장가격에 접근하기 시작하면, 제 1 단계로 관측결과를 발표하고 생산자 단체를 통해서 경고를 발함과 동시에 대규모 사육농가들의 증식을 억제토록 권유한다. 3개 도매시장의 평균가격(이

하 기준가격이라 함)이 최저보장가격을 10월 이상 밑돌게 되면, 제 2 단계로 축협은 축산진흥기금을 가지고 도매시장에서 돼지고기를 수매하기 시작한다. 일정기간(약 20일 내외)축협이 돼지고기를 수매해도 기준가격이 안정대 속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제 3 단계로 수출카드를 제시한다. 물론 부분육의 수출 창구는 항상 열려 있어야 하고, 일원화 되어야 한다. 그래도 돼지가격이 회복되지 않은채 1개월이 지나고 불황의 조짐이 나타나면, 어미돼지의 계획적인 감축과 사육두수의 억제조치가 제 4 단계로 취해져야 한다. 어미돼지의 감축과 사육두수의 억제조치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등록제를 밑바탕으로 삼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준가격이 최고허용가격을 벗어나 상승하면 제 1 단계 비축물량방출, 제 2 단계 대체육 방출, 제 3 단계 돼지고기수입. 그러나 돼지고기의 수입단계까지 가지 않아도 가격은 쉽게 안정

**반**대로 기준가격이 소비자보호를 위한 최고허용가격을 벗어나 1주일 이상 상승하게 되면 제 1 단계로 비축물량을 방출해야 한다.

그래도 기준가격이 2주일 이상 안정대로(安定帶) 귀속하지 않고 계속 상승하면, 제 2 단계로 대체육(代替肉)인 쇠고기나 닭고기 등을 방출한다. 이것마저 효과를 가져다 주지 않으면 제 3 단계로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돼지고기의 수입단계까지 가지 않아도 가격은 쉽게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햄이나 베이컨 등의 돼지고기 가공제품을 개발하여 수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가공산업도 육성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대규모 기업양돈은 가급적 억제하되, 이들 기업이

자체 가공원료를 확보하려고 하거나 또는 수출을 모색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인정해도 부업 양돈농가들의 소득증대와 서로 상충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장기적으로 가공산업 육성, 기업양돈  
가급적 억제, 돼지수급 및 가격안정 전담기구 만들어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런 모든 수단을 효율적이고 조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이

다. 아마도 양돈과 관련된 현재의 여러 기구를 통합해서 명실상부한 하나의 기구를 만들고, 이들로 하여금 “돼지수급 및 가격안정”에 대한 일체의 업무를 떠맡도록 전문화시키지 않으면, 양돈산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상에 아이디어만 가지고 모든 일이 쉽게 되어진다면, 오늘날 우리 인간은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는 쉬운 일이 없다.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그보다 더 큰 노력과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

돼지  
법정  
전염병의  
예방대책

특

집

김 범 래

(농수산부 가축위생과장)

가축전염병의 예방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제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중앙, 각도, 시, 군, 읍, 면, 리, 등에 이르기까지 방역관계자와 가축사육자가 긴밀히 협동하는 예방체제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최근에는 가축사육두수의 증가, 집단사육규모의 확대, 가축 및 축산물의 유통증대 등으로 가축 방역은 보다 중요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돼지의 법정전염병은 다음과 같다.

○ 제 1 종 가축전염병 : 구제역, 탄저, 부루세

라병, 유행성뇌염(일본뇌염), 결핵병, 돈단독, 아프리카돈콜레라, 돈콜레라, 돈수포병, 특소푸라즈마병, 가성광견병, 출혈성 패혈증

○ 제 2 종 가축전염병 : 돼지전염성 위장염, 돼지헛센병, 돈두, 수포성구내염이다.

이러한 법정전염병은 그 최초 발견자가 환축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해당 방역담당 공무원은 이에 대한 발생, 만연 등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여 보고 및 처리를 조기 실시하므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상에는 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